

---

---

2021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공모사업 안내

---

---

---

## 목 차

---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 4
2. 2021년 공모사업 안내 / 7
  - 가. 공모사업 목적
  - 나. 공모사업 개요
3. 예산편성 / 12
  - 가. 예산작성 방법
  - 나. 기타경비 예산 편성 기준
4. 관련문의 / 15
5. 별첨자료 / 16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관점 체크리스트
  - 성과척도(다문화 수용성, 사회적지지)

## 유엔아동권리협약 2조

### 【차별 금지】

아동은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성별,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경제력,  
의견, 신체조건 등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 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소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1948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존중 받으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개선을 위해 아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아동옹호대표기관입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보호정책

### 가.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이란?

재단은 미션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하여 아동, 가족,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아동의 권리가 보호, 존중,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을 포함한 11개국의 아동 중심 NGO들의 연합체인 국제어린이재단 연맹(이하, ‘연맹’)은 2016년 11월 ‘Keeping Children Safe’에 가입하고 ‘아동보호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 연맹 회원국은 이를 준수하여 정책을 도입 및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정책(Child Safeguarding Policy)’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전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동이 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본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한다는 재단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 나. 아동보호정책 대상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재단 이사, 임직원,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사회 및 임직원(재단 이사 및 임직원을 제외한 아래의 대상자는 ‘관련자’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턴(근로장학생 등) 및 실습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원자(개인, 기업, 단체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요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문단 및 자문 위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단에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력기관 및 소속직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언론인 및 미디어 관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대사(나눔대사 등) 및 후원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관련자</li> </ul>

## 다. 아동보호정책 핵심개념

아동보호	아동에게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조직 차원의 정책, 절차 및 이의 이행
아동	정책의 목적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해당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의 관련 법규가 정한 바와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
협력기관	아동을 위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재단과 함께 일하며, 아동의 정보를 다루거나 아동과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기관(직원 포함)
위험 (아동폭력)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의 생존 및 발달에 위험을 가하거나 잠재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 아동을 방임 및 유기하거나, 체벌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포함
적용분야	직원 채용, 교육 및 훈련,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아동정보보호, 아동과의 교류활동,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활동

## 라. 아동보호정책 행동강령

-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권리의 보호를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둔다.
-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의 의견을 경청한다.
- 아동이 관련된 모든 활동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고려 하에 수행하고, 아동이 처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최소화한다.
- 아동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아동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 아동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아동에게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행사하지 않는다.
- 지원의 조건으로 아동에게 재단의 아동보호정책에 위반되는 요구를 하거나, 뇌물 혹은 선물을 받지 않는다.
- 정책에 위반하는 자료를 취급하거나 배포하지 않는다.
- 정책 및 행동강령에 위반하는 사안을 보고 절차에 따라 반드시 보고한다.

## 2. 2021년 공모사업 안내

### 가. 공모사업 목적

아동의 권리를 보호·증진·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기관과 연대 및 협력하여  
아동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 대응

※ 재단의 복지사업방향 및 추구가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의 권리를 기반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준으로 복지사업을 실천하는 모든 과정에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직접적인 문제해결과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아동의 권리 보호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무 이행자가 책무를 다하도록 지속적으로 촉진한다.

### 나. 2021년 공모사업 개요

#### 1) 사업주제: 이주배경아동<sup>1)</sup>의 돌봄환경<sup>2)</sup> 개선 지원 사업

- 위드(With) 코로나시대 지역사회 통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로도가 커지면서 인종차별과 지역혐오, 세대·계층·종교 간 갈등 등 각종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이주배경아동 가정의 경우 그 대상이 되기 쉬움. 재단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통합'을 제시하고자 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이주배경아동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2) 사업방향

-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고, 공모 주제를 기반으로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 성별, 인종, 장애 유무 등 차별 없이 아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기반사업
- 공모 주제 범주에 맞는 창의적이고 실험성을 가미한 사업
- 아동의 참여를 바탕으로 아동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 재단 사업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와 연대 및 협력하는 사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관의 규모, 형태와 상관없이 재단의 추구가치를 함께 하는 다양한 기관의 참여

1) 이주배경아동이란 난민아동, 미등록이주아동, 다문화가정아동을 포함

2) 돌봄환경이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사회문화적 환경이 조성됨으로 정의함.

3) 신청대상: 아동을 주 대상으로 비영리사업을 펼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 4) 신청 제외대상

- 동일사업으로 2019~2021년 재단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배분기관(재단 사업기관 포함)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기관
- 정치적 또는 종교적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사업 또는 기관
- 법령상 금지된 영역의 사업 또는 유사사례로 법적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기관
- 정부 및 지자체
- 영리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기관
- 기관(단체)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5) 사업내용 및 신청금액

주요사업 내용	신청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내에서 이주배경아동과 비(非)이주배경아동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li> <li>•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주배경 아동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활동</li> <li>•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li> <li>• 기타 이주배경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아동의 돌봄환경을 개선하는 사업</li> </ul>	<p>최대 3,000만원 이내</p>

#### ■ 신청 시, 참고사항

- 코로나 19 대응 방안을 포함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실행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야 함(비대면, 소규모 방식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진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활용 프로그램 등).
- 단순 문화소개 및 체험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은 지양하며, 근본적으로 이주배경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그램 구성 시 필수 포함 사항: 아동권리기반 공모사업 수행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이주배경아동과 비(非)이주배경아동이 함께하는 통합프로그램, 지역주민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활동
- 또한, 프로그램의 성과측정을 위해 재단에서 제시한 성과척도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함(별첨 자료 참고, 선정기관에 한해 추후 확정된 척도 발송 예정)

6) 사업기간: 2021. 01. 01.~2021. 12. 31.(1년)

다. 진행일정

구분	진행일정
<p>공모사업 신청</p>	<p>① 신청기간: 2020년 10월 05일(월) ~ <u>2020년 11월 15일(일) 마감</u></p> <p>②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greencf@childfund.or.kr)</p> <p>③ 제출서류</p> <p>(1) 신청공문 (직인필수)</p> <p>(2) 사업신청서</p> <p>(3) 사업계획서</p> <p>(4) 고유번호증 또는 시설신고증(컨소시엄 형태의 경우, 대표기관의 서류제출)</p> <p>(5)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p> <p>④ 제출양식: 첨부서류 참조</p>
<p>온라인 사업 설명회</p>	<p>① 일 자 : 2020년 10월 14일(수)</p> <p>② 장 소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공모사업 안내 페이지 내 업로드</p>
<p>심사</p>	<p>① 일 자 : 2020년 11월 16일(월) ~ 2020년 12월 22일(화)</p> <p>② 심사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심사: 서류심사, 면접 또는 현장실사(필요시)</li> <li>▣ 2차 심사: 공모사업 심의위원회 최종회의</li> <li>▣ 최종 선정발표</li> </ul> <p>③ 참고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실사는 일부 기관에 해당</li> <li>- 해당권역 재단 지역본부의 의견을 최종 심사에 반영</li> </ul>
<p>최종 선정발표</p>	<p>① 일 자 : 2020년 12월 23일(수) 예정</p> <p>② 방 법 : 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p> <p>③ 참고사항 : 이후 사업 및 예산조정이 진행될 수 있음</p>

협약식	① 일 자 : 2021년 1월 중 ② 참고사항 : 선정기관 대상 일시 및 장소 추후 안내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	① 일 자 : 2021년 1월 중 ② 교육내용 : 재단의 복지사업 이해, 아동권리교육 콘텐츠 활용법 등 ③ 참고사항 - 선정기관 담당자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 - 일시 및 장소는 추후 안내 - 코로나 상황에 따라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라. 심사기준

구분	심사항목
사업수행능력	전문성, 책임감, 수행능력
사업 적합성	사업방향 및 주제와의 적합성, 사업의 필요성, 변화의 가능성
실현 가능성	사업의 구체성, 지역사회 연대계획
사업 준비성	예산구성의 타당성, 대응계획
재단과의 연계성	신청사업과 재단의 가치와의 부합정도, 연대 및 협력의 가능성

## 마. 주의사항

- 1) 예산수립 시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며, 신청금액 중 사업비(직접 비용)는 전체 예산 중 70% 이상을 책정,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는 30% 이내로 책정함.  
(인건비 및 운영비 책정은 필수사항 아님)
- 2)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후원금 지원, 단순 물품지원 형태의 사업 및 예산수립 불가함.  
(대상자 의료비 및 심리치료비 포함)
- 3) 재단은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선정기관은 조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반영한 조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바. 기타사항

- 1) 재단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계획을 근거로 사업수행 및 집행하여야 함.
- 2) 사업수행 과정 중 사업계획 및 예산사용의 일부 조정이 발생하면 재단의 사전승인 후 시행함.
- 3)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중단, 환수 등의 조치와 더불어 향후 5년 간 재단 공모사업 신청 불가함.
- 4) 재단은 신청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운영 중인 재단 지역본부로부터 의견서를 접수하여 최종심사에 반영함.
- 5) 선정기관은 협약식(기관장) 및 지원기관 담당자 교육(팀장 및 실무자)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하며, 재단은 사업수행 점검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사업기관 방문 및 간담회를 진행할 수 있음. 또한 사업종료 후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평가회(발표회)를 진행할 수 있음.
- 6) 제출된 서류는 공모사업 심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반환되지 않음.

### 3. 예산편성

#### 가) 예산작성 방법

- 1) 목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로만 구분
- 2) 전체 지원금(100%) 중 사업비 비율은 70%,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의 비율은 30%임. (비율 규정 준수)
- 3) 세목은 해당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단위 편성  
(세목은 프로그램 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 예산 변경 등의 업무 처리에 있어 효율적임)
- 4) 각 항목별 예산의 산출근거를 상세하게 작성  
(단가, 수량, 인원수, 건수, 횟수 등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제시)
- 5) 불필요한 예산을 과다 책정하지 않으며, 계획 대비 집행의 차이를 줄여 예산의 신뢰성을 확보

목	설 명	해당항목	참고
인건비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인력에 투입하는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담당자/보조담당자 인건비</li> <li>- 사업 담당자/보조담당자의 시간 외 수당</li> <li>※ 월 60시간, 1개월 이상 근무 시 4대 보험 가입필수</li> <li>※ 2021년 최저임금(8,720원) 준수</li> <li>※ 퇴직적립금의 경우 전담직원이 해당사업 수행만을 위해 1년 이상 계약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책정</li> </ul>	30%
관리 운영비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유류비, 여비 등	
사업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b>‘간접’</b> 비용 <sup>3)</sup>	강사비, 자문비, 현수막제작비, 배너제작비, 현판 및 상패제작비, 기념품제작비, 인쇄비(초청장, 유인물, 자료집 등) 등	70%
	사업 수행에 필요한 <b>‘직접’</b> 비용 (실인원수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식비, 간식비, 교육교재비, 입장료, 사업수행을 위한 재료비 등	

3) 비율의 제한은 없으나 사업의 목적이나 방식에 따라 조정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나)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

### 1) 강사수당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참고	
강사비	특별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현직 장/차관(급) 이상</li> <li>전/현직 대학총장(급)</li> <li>전/현직 국회의원</li> <li>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li> <li>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시간 350,000원</li> <li>초과 시간당 170,000원</li> </ul>	강사비는 원고비 및 교통비가 포함된 비용임.
	1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li> <li>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li> <li>정부출연 연구기관장</li> <li>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li> <li>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li> <li>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li> <li>박사 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사회복지 기관·시설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시간 280,000원</li> <li>초과 시간당 140,000원</li> </ul>	
	2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li> <li>전·현직 4/5급 공무원</li> <li>중소기업체 임원급</li> <li>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li> <li>통계이론, SAS, SPSS 등의 전문가</li> <li>박사학위소지자</li> <li>사회복지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 소지한 자</li> <li>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시간 200,000원</li> <li>초과 시간당 100,000원</li> </ul>	
	3급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li> <li>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li> <li>사회복지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li> <li>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강사</li> <li>특별강사, 일반1급, 일반2급에 해당하지 않는 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시간 150,000원</li> <li>초과 시간당 75,000원</li> </ul>	
	보조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강사를 보조하는 강사 (실기실습 보조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초 1시간 70,000원</li> <li>초과 시간당 45,000원</li> </ul>	
	다수인 출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시간 이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이하 28만원</li> <li>6~10인 40만원</li> <li>11인 이상 55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시간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인 이하 35만원</li> <li>6~10인 50만원</li> <li>11인 이상 70만원</li> </ul>	

2) 여비 및 기타 경비 지급 기준

항목	기준		사용한도	참고
출장 여비	시내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li> <li>• 1인 / 1일 기준</li> </ul>	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 미 소유 기관에 한하며 재단의 사전 동의 필수</li> <li>• 필수첨부서류: 출장목적이 확인되는 대장 또는 기록</li> </ul>
	시의 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통비 (KTX일반,고속버스,전세버스 등)</li> </ul>	실비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비에는 시내버스, 택시 등 현지교통비 및 입장료 등의 일반 잡비 포함</li> <li>• 기관차량 이용 시 일비 50%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비</li> </ul>	15,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비 / 1식 기준</li> </ul>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비</li> </ul>	50,000원			
식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기준</li> </ul>	1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식비는 식대(1식)와 통합사용 가능</li> <li>• 사업평가회, 감사행사 등의 저녁활동 진행시 필요한 경우 석식비 20,000원 편성 가능</li> <li>• 외부기관과의 회의 진행시 간식비 및 식사비 편성 가능</li> <li>• 필수첨부서류: 결과보고서, 참여자 명단, 사진</li> </ul>	
간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 / 1일 기준</li> </ul>	5,000원		

☞ 기타경비 예산 편성시 참고사항

① 출장여비 지급 시

- 시외출장/식비: 조식은 지급하지 않고, 석식은 사무실 도착시간이 20시 이후인 경우 해당. 단, 숙박의 경우 다음날 아침 식비는 지급.
- 시외출장/일비:
  - 숙식 제공되는 경우 : 출장 시작일과 마치는 날만 100% 지급.
  - 숙식 + 교통비 제공되는 경우 : 출장시작일과 마치는 날만 50% 지급.

② 비품/장비 구입 시

-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품/장비는 구입 가능. 단, 관리 운영비로 편성

③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지급 유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 공무원,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공공기관, 단체 및 기관의 장과 임직원
- 국공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인의 임직원
- 언론사의 대표 및 임직원
- 이상 공직자의 배우자

#### 4. 관련 문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배분사업팀 공모사업 담당자  
02)775-9122(내선325), [greencf@childfund.or.kr](mailto:greencf@childfund.or.kr)

※ 메일로 문의주시면, 빠르게 회신하겠습니다.

※ 사업계획 과정에서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관점 및 수행기준이 적용되었는지  
체크리스트를 통해 점검 후 제출

■ 아동권리기반 복지사업 수행원칙 및 점검 체크리스트

원칙	질문사항
아동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을 권리주체자로 존중하는가?</li> <li>- 아동들에게 권리주체자임을 알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였는가?</li> <li>- 아동중심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장애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하였는가?</li> </ul>
책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의 원인을 근본적/구조적 원인까지 감안하는가?</li> <li>- 의무이행자가 누구인지 구분하였고, 그들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는가?</li> <li>- 의무이행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가?</li> </ul>
비차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참여 아동을 선정하는 과정에 차별요소가 없는지 검토하였고, 차별요소 없이 아동을 선정하였나?</li> <li>- 아동들의 이용 및 접근성을 감안하였는가?</li> <li>- 아동의 성별, 종교, 성적지향, 장애, 출신 등의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는가?</li> </ul>
아동최상의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진행의 모든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li> <li>- 진행 과정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과 충돌되는 상황이 있었는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발생 했는가?</li> </ul>
아동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이 고려되었는가?</li> <li>- 아동의 연령 및 개별적 특성에 맞는 활동과 자원이 연계되었는가?</li> </ul>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의 목소리에서 시작되었는가?</li> <li>- 아동들이 프로그램 수행과 관련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가?</li> <li>- 아동의 의견을 진지하게 반영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반영한 내용을 아동에게 공유하였는가?</li> </ul>
아동친화적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프로그램을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가?</li> <li>-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가?</li> <li>- 개선된 아동친화적 환경요소는 무엇인가?</li> </ul>
파트너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에게 주요한 영향을 미칠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대활동을 포함하였는가?</li> <li>- 프로그램 진행 시 연대로 인한 긍정적 영향은 무엇인가?</li> </ul>

**예시) 1. 다문화 수용성 척도4)(통합프로그램 참가자 중 비이주배경아동 대상)**

·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다문화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에는 여러 인종,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오면 좋다.	1	2	3	4	5
2	피부색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이 들어와 사는 것이 좋다.	1	2	3	4	5
3	우리 동네에 문화나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 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1	2	3	4	5
4	우리나라에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이 많이 늘어나지 않았 으면 좋겠다.	1	2	3	4	5
5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법적으로 한국인이 되도 한국 사람 과 똑같이 대하기는 어렵다.	1	2	3	4	5
6	한국에서 자라나고 태어났어도 진정한 한국인이라고 말하기 는 어렵다.	1	2	3	4	5
7	우리나라의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우리나라 에서 오래 살았더라도 한국 사람으로 보기 힘들다.	1	2	3	4	5
8	우리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 가정(국제결혼가정)의 아이가 우 리나라 말을 잘 못한다면 나와 같은 한국인이란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9	이웃에 사는 외국이주민들이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긴다면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1	2	3	4	5
10	나는 한국에 사는 외국이지문끼리 따로 모여서 자기들의 음 악이나 무용공연 등을 즐기는 것을 보면 피할 것 같다.	1	2	3	4	5
11	한국에 사는 외국이주민들끼리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가지는 것을 보면 가까이 가는 것을 피하고 싶다,	1	2	3	4	5
12	따돌림이나 놀림을 받는 아이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문화 다문화 가정 출신 아이라면 쉽게 편을 들어 주지 못할 것 같다.	1	2	3	4	5
13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은 한국 사람끼리 결혼한 사람보다 더 심각한 가정문제를 겪을 것이다.	1	2	3	4	5
14	한국 사람이 외국이주민들을 이해해 주길 바라기 보다는 이 주민들이 한국 사람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15	외국이주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의 말 보다는 한국말 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1	2	3	4	5
16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이주민 여성을 한국의 풍습과 예절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1	2	3	4	5
17	외국이주민이 한국 국민이 되려면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 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18	우리 학교나 학급에 외국이주민 가정의 아이가 있다면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친구로 지낼 수 있다.	1	2	3	4	5
19	우리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친구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하면 외국인 친구의 집에 가서 같이 놀 수 있다.	1	2	3	4	5

4) 여성가족부(2012)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척도(KMCI-A)를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구성한 유선미 (2016)의 척도

20	나는 기회가 된다면 상대방의 인종, 국적, 문화권에 상관없이 기꺼이 친구로 사귀겠다.	1	2	3	4	5
21	내 생일에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게 된다면 다문화 가정의 아 이도 함께 초대하고 싶다.	1	2	3	4	5
22	다른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우리나라 보다 잘사는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1	2	3	4	5
23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은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에 비해 능력도 더 뛰어나고 일도 더 잘 할 것이다.	1	2	3	4	5
24	외국인 친구를 사귀려면 개발도상국 보다는 선진국에서 온 친구를 사귀는 것이 좋다.	1	2	3	4	5
25	선진국에서 온 이주민과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 온 이주민 을 똑같이 대하기는 힘들다.	1	2	3	4	5
26	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다.	1	2	3	4	5
27	나는 한 나라의 국민만으로서 보다는 세계 속의 훌륭한 시민 이 되는 것에 더 큰 관심이 있다.	1	2	3	4	5
28	나는 식량부족으로 굶주린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 내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1	2	3	4	5
29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는 다른 나라의 노동자를 돕기 위한 활동에 참여 할 생각이 있다.	1	2	3	4	5
30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출신 외국인 주민의 옆자리 에 앉는 것은 가능한 피하고 싶다.	1	2	3	4	5
31	버스에서 옆자리에 백인이 앉았을 때 보다 흑인이 앉았을 때 더 무서운 생각이 들 것이다.	1	2	3	4	5
32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이주민과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 탕에 들어가야 한다면 망설여질 것이다.	1	2	3	4	5
33	한국에 이민 온 외국이주민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34	외국인 노동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 한다면 두려운 생각 이 클 것이다.	1	2	3	4	5

**예시) 2. 다문화 수용성 척도<sup>5)</sup>(성인 대상)**

· 다문화 수용성에 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다문화수용성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나라는 다양한 종교, 문화가 많이 들어올수록 좋다.	1	2	3	4	5
2	우리 동네에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살아도 이상하지 않다.	1	2	3	4	5
3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문화를 접하는 것이 흥미롭다.	1	2	3	4	5
4	부모가 한국인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피부색이 다르면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5	한국에서 귀화해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므로 진정한 한국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1	2	3	4	5
6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1	2	3	4	5
7	한국의 전통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한국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	1	2	3	4	5
8	나는 내가 사는 지역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9	이웃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주 모여 자신들의 고유 요리를 즐기면 가깝게 지내기 힘들 것 같다.	1	2	3	4	5
10	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따로 모여서 자신들의 음악이나 공연을 즐기는 것을 보면 불편해서 피하게 된다.	1	2	3	4	5
11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살면서 따로 모여 자신들의 종교 행사를 하면 눈총을 주겠다.	1	2	3	4	5
12	외국인 근로자들은 일을 할 때 게으름을 더 많이 피울 것이다.	1	2	3	4	5
13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을 믿고 맡기기 어렵다.	1	2	3	4	5
14	한국인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이해하기 보다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인을 이해하려고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	1	2	3	4	5
15	한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기의 문화를 버리고 한국 문화나 관습을 따르도록 해야 한다.	1	2	3	4	5
16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라 하더라도 부모나라 언어보다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	1	2	3	4	5
17	경전철이나 버스에서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옆 자리에 앉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	1	2	3	4	5
18	동네에서 피부색이 다른 외국인 근로자와 마주치면 왠지 불편한 느낌이 들어 피하게 된다.	1	2	3	4	5
19	개발도상국 출신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 수영장이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는 것은 꺼려진다.	1	2	3	4	5
20	한국에 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대부분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5)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한 다문화 수용성 진단도구(KMCI)

21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사는 지역에 가야한다면, 두려운 생각이 들 것이다.	1	2	3	4	5
22	일을 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동료로 만난다면 내가 먼저 친구가 되고자 노력하겠다.	1	2	3	4	5
23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모여 사는 지역에 있는 식당에 기꺼이 들어가 밥을 먹겠다.	1	2	3	4	5
24	내가 만약 기혼이라면 자녀가 외국인 근로자와 연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다.	1	2	3	4	5
25	다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우려면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의 것을 배우는 것이 좋다.	1	2	3	4	5
26	선진국 출신 사람들은 개발도상국 출신 사람들에 비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1	2	3	4	5
27	선진국에서 온 이주민과 경제수준이 낮은 나라에서 온 이주민을 똑같이 대하기는 힘들다.	1	2	3	4	5
28	개발도상국의 문화는 선진국의 문화에 비해 더 열등하다.	1	2	3	4	5
29	나는 외국인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으면 도와줄 것이다.	1	2	3	4	5
30	나는 한 나라의 국민이기보다는 세계시민이 되고 싶다.	1	2	3	4	5
31	나는 식량부족으로 힘들어 하는 나라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보태기 위해 하루 한 끼를 굶을 수 있다.	1	2	3	4	5
32	빈곤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의 사람들을 위해 성금을 낼 의향이 있다.	1	2	3	4	5

예시) 3. 사회적 지지 척도<sup>6)</sup>(통합프로그램 참가자 중 이주배경아동 대상)

· 다음 문항을 읽고, 해당되는 곳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2	내 친구들은 나를 따돌리는 것 같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4	내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친구들은 날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는 것 같다.	1	2	3	4	5
5	나와 내 친구들은 서로 잘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6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7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1	2	3	4	5
8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	2	3	4	5
9	우리 가족은 나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1	2	3	4	5
10	우리 가족은 서로 많이 도와주는 것 같다.	1	2	3	4	5
11	우리 가족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1	2	3	4	5
12	우리 가족은 갖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것 같다.	1	2	3	4	5
13	내가 힘들어 할 때 우리 가족은 내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 같다.	1	2	3	4	5
14	우리 가족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다.	1	2	3	4	5
15	우리 가족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1	2	3	4	5
16	우리 가족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17	나는 선생님과 친한 것 같다.	1	2	3	4	5
18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1	2	3	4	5
19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1	2	3	4	5
20	우리 선생님은 내 기분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1	우리 선생님은 날 좋아하시는 것 같다.	1	2	3	4	5
22	우리 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1	2	3	4	5
23	내가 아프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 선생님은 날 걱정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24	우리 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다.	1	2	3	4	5

6) Dubow & Ulman(1989)이 개발한 SSAS & SAB, Cohen & Hoberman(1983)이 제작한 ISEL, 그리고 Lempert 등 (1989)이 개발한 PQ를 한미현(1996)이 번안한 척도를 최윤석(2014)이 사용한 척도